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의 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의안번호 : 2875
- 발의자 : 이현찬 의원(찬성의원 18명)
- 발의일 : 2021년 10월 15일
- 회부일 : 2021년 10월 20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제5조).
- 나. 청원경찰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청원경찰의 직무범위, 정원책정요구와 승인,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제9조).
- 다.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 휴가, 복무상 의무,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원경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 (2021.10.25. ~ 11.1.) 주요결과

입법예고결과 요약	
의견제출자	제출 의견
서울시청원경찰 (공공안전관)노동조합	<p>○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p> <p>① 청원경찰법 시행령 18조 (신분)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하니, 청원경찰법 제1조 ~ 제12조에서 보면 청원경찰 신분의 이중적인 면을 볼 수 있음.</p> <p>②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조문 추가 요청이 있었음.</p> <p>(교육훈련) 서울특별시 인력개발과는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청원경찰에게도 적용하여야 한다.</p> <p>1. 청원경찰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 · 기술 및 능력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대학교, 대학원 진학에 대한 등록금 일체를 공무원에 준한 대우로 지원 할 경우, 필요한 예산과 범위 · 계획 등을 수립하여 고려할 사항</p> <p>(처우) 서울시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1. 임용 및 인사 2. 복무 3. 징계 4. 보수 5. 재해보상금 및 퇴직금(공무원연금) 6. 휴직 및 명예퇴직</p>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7. 직권남용8.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9. 공무원후생복지10. 복종 및 비밀엄수11. 신분보장(면직)12. 쟁의행위금지 |
|--|---|

5. 검토의견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제정안은 서울시 소속 청원경찰의 직무범위, 교육, 복무상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하여려는 것임.

[공공안전관(청원경찰) 현황(2021.11.8.)]

(단위: 명)

부 서 별(29개)		정원	현원	남	여	별도	비고
계		504*	493	456	37	8	
본청	소계(4개부서)	77	77	69	8	2	
	민 방 위 담 당 관	2	2	1	1	-	
	총 무 과	70	70	63	7	2	육아휴직 1, 요양휴직 1
	교 량 안 전 과	4	4	4	-	-	
	일 자 리 정 책 과	1	1	1	-	-	
직속기관	소계(4개부서)	27	27	24	3	-	
	보건환경연구원	8	8	8	-	-	
	인 재 개 발 원	4	4	4	-	-	
	서울종합방재센터	9	9	8	1	-	
	소 방 학 교	6	6	4	2	-	
사업소	소계(20개부서)	399	388	362	26	6	
	상수도사업본부	99	99	99	-	1	요양휴직 1
	한 강 사 업 본 부	156	145**	139	6	2	육아휴직 2
	데 이 터 센 터	2	2	2	-	-	
	시립어린이병원	4	4	4	-	-	
	시립서북병원	4	4	4	-	-	
	시립은평병원	4	4	4	-	-	
	시립미술관	3	3	1	2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9	49	43	6	1	자기계발휴직 1
	동부도로사업소	1	1	1	-	-	
	서부도로사업소	1	1	1	-	-	
	남부도로사업소	1	1	-	1	-	
	북부도로사업소	1	1	1	-	-	
	성동도로사업소	1	1	1	-	-	
	강서도로사업소	1	1	-	1	-	
	중랑물재생센터	7	7	7	-	-	
	난지물재생센터	9	9	9	-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5***	5	4	1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6	6	4	2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32***	32	28	4	1	육아휴직 1
	서울식물원	13	13	10	3	1	육아휴직 1
시의회	의회사무처	1	1	1	-	-	

* 서울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상 정원은 509명이나 교량안전과 정원 조정(9→5) 예정 감안한 관리정원 504명

** 한강사업본부는 경찰청 청원경찰 직무범위 회신에 따른 청원경찰 단속불가에 따라 정원 조정 추진 중

*** 3. 10.자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정원 1명 증(4→5) 및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정원 1명 감(33→32)

- 본 조례안은 목적, 정의, 적용범위, 기본계획 수립, 직무범위, 정원책정요구와 승인, 교육, 보수 및 수당 등을 포함한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문체계 및 구성]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청원경찰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제2조(정의)	- “청원경찰”, “정원관리부서”, “관리부서” 정의
제3조(적용범위)	- 서울시 본청, 시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청원경찰에 적용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단체협약이나 「청원경찰법」,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
제5조(책무)	- 시장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환경 조성 및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권리 보호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함.
제6조(기본계획 수립)	- 청원경찰의 현장 대응 발생에 따른 위험요소 등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의견 청취 및 이행여부 점검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제7조(직무범위)	- 청원결장의 직무 범위를 8가지로 열거함.
제8조(정원책정요구와 승인)	- 관리부서의 장과 정원관리부서의 장과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정원책정요구와 승인 내용과 절차 등을 규정함.
제9조(교육 등)	- 청원경찰에 대한 교육훈련을 인력개발과장이 총괄하고, 세부 교육 사항을 규정함.
제10조(보수 및 수당 등)	-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 등 경비를 청원경찰 법령과 경찰청에서 고시하는 경비 기준액을 따르도록 함.
제11조(휴가)	- 청원경찰 휴가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르고, 퇴직전 1개월의 범위에서 퇴직 준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제12조(복무상 의무)	- 청원경찰의 복무상 의무는 청원경찰법령내 제한된 조문내에서만 허용하도록 함.
제13조(시행규칙)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부칙	- 공포일부터 시행

○ 특히, 본 제정안은 청원경찰의 정원 조정, 교육, 복무상 의무, 보수와 수당, 휴가 등 단체협약과 규칙(「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한편, 청원경찰의 후생복지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서울특별시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보임.

- ※ 청원경찰 직무 등에 관해서는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을 적용받으며 구체적인 근로조건 및 보수는 단체협약에 따르고 있음.
- ※ 서울시의 청원경찰 관리는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시장훈령)」에 따르고 있음.
- ※ 조례 제정(3개 시·도) : '21.11월 기준, 경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청원경찰 관련 타시·도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경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법규명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공표일자	2021. 5. 20.	2020. 11. 11.	2021. 11. 4.

○ 다만,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이면서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 등을 적용받는 복합적이고 이중적 신분지위에 있다는 점, 시장의 고유권한 사항인 인사권 등의 개입정도와 적정성 여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업무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하여 청원경찰의 처우를 공무원과 유사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조례안 세부 내용 검토

1)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의 목적은 「청원경찰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관리와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원경찰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정(1962.4.3.) 이후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 근로자 신분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 등이 적용되는 복합적 상황들이 존재하여 입법목적 달성에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겠음.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 한다.

③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2. 청원경찰의 피복비
3. 청원경찰의 교육비
4. 제7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7조의2에 따른 퇴직금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③ 청원주의 제1항제1호에 따른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한다.

제10조의 7(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한다.

○ 또한, 동 조례안의 상당부분이 「청원경찰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 조례 제정으로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변화하는 근무환경 등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측면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시각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서울시 공공안전관(청원경찰)지부)과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하여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을 위해 협약을 체결(2021.1월.28일)하고 있음.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청원경찰”, “정원관리부서”, “관리부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에 임용되어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
2. “정원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의 정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되는 부서로서 청원경찰의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정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하여 조례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청원경찰’의 정의는 「청원경찰법」(제2조)에서 ‘청원경찰’을 규정하고 있고, ‘정원관리부서’는 서울시 행정국 인사과를 지칭하며,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이 배치되는 부서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
※ ‘청원경찰’은 현행 법령상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근로자임.

「청원경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3)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4조)

- 안 제4조는 본 조례가 서울시 청원경찰 관련 규정에 대하여 다른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고,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청원경찰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에 관한 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과 관련 법령간에 적용 순위를 정하려는 것임.

안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단체협약이나 「청원경찰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에 관한 법」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다만, 청원경찰은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을 적용 받으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적용에 대한 사항이 불분명한 바, 단체협약과 다른 법령간 적용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교섭의 대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구 분	대 상	비 고
의무적 교섭대상	▶ 임금, 수당, 근로시간, 휴게·휴일, 복지제도, 안전보건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 ⇒ 단체협약 체결시 규범적 효력 발생(법규법)	
임의적 교섭대상	▶ 조합활동에 관한사항, 조합비 공제,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사항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해당되는 사항 ⇒ 단체협약 체결시 채무적 효력 발생	
일반적 비교섭대상	▶ 정책결정, 임용권 행사, 예산편성·집행, 조직·정원, 기관 관리·운영 등	
교섭금지 대상	▶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지원, 유일교섭단체, 구속자 석방,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사항	

※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규정을 둘 수 없으므로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둘 때에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 또는 규칙보다 우선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둘 때 주의하여야 함.

4) 책무(안 제5조),

- 안 제5조는 시장에게 청원경찰의 안정된 노동환경 조성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관리부서 또한 청원경찰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시장과 관리부서로 하여금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안 제5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청원경찰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권리이 보호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 본청, 시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청원경찰을 사용하는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의 책무규정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책임 또는 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그 법령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해야 할 책무 등을 정한 것으로, 이러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법령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령의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두는 것임.

- 다만, 동 규정이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안 제6조는 청원경찰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반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의 현장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
2. 청원경찰의 야간순찰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
3. 청원경찰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원경찰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동 개정안은 청원경찰의 현장 대응과 야간순찰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와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게 함으로써 주기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청원경찰 후생복지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2년마다 청원경찰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논의하고, 논의된 사항을 협약으로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3년을 주기로 기본계획을 실시할 경우 단체협약 사항과 중첩되거나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6) 직무범위(안 제7조)

- 안 제7조는 민원인 안내 및 출입자 단속, 기관내 근무 직원의 안전 및 시설물 이상 유·무 순찰 확인 등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 직무범위의 설정은 청원경찰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안 제7조(직무범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인 안내 및 출입자 단속
2.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발생 예방을 위한 경비 및 선·후 조치
3. 기관 내 근무 직원의 안전 및 시설물 등 이상 유·무 순찰 확인
4. 기관 내 차량의 주차질서확립 및 교통 방해 요소 제거
5. 기관 내 공공의 안전과 관련한 기초질서 유지
6. 내·외부 주요 인사 경호
7. 점거농성 또는 민원인의 부서 무단 진입 시 민원인 휴대물품 육안 검사 등 보안 조치
8.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경비업무의 수행

- 다만, 한강사업본부, 녹지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등과 같이 상이한 성격을 가진 기관들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청원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직무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상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5.20 제12600호(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7) 정원책정요구와 승인(안 제8조)

- 안 제8조는 관리부서장은 인력수요분석 및 직무분석 등을 실시한 후 정원책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정원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고(안 제8조 제1항), 정원관리부서장은 채용목적·인원·기간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예산담당관과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며(안 제8조 제2항) 예산담당관은 정원책정승인서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통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3항).

안 제8조(정원책정요구와 승인)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력수요분석 및 직무분석 등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경찰 정원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정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원관리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청원경찰 정원책정요구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채용목적·인원·기간 등의 적정여부와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청원경찰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산담당관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예산담당관은 청원경찰 정원책정승인서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정원관리부서의 장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동 제정안은 청원경찰 의원면직 및 퇴직 등에 따른 불안정한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상시적·지속적 업무 수행과 효율적인 정·현원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간 공공안전관(청원경찰)채용 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35		41		34*	
	22	13	20	21		

[최근 3년간 공공안전관(청원경찰)퇴직 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의원면직	정년퇴직	의원면직	정년퇴직	의원면직	정년퇴직
	30		38		34	
	13	17	14	24	5	29**

** 2021. 12. 정년퇴직 예정인 15명 포함

- 다만, 청원경찰 정원 책정 및 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속하는바, 정원책정요구와 승인하도록 한 조례안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정원책정요구 및 승인과 관련된 절차 등을 권고적·선언적 성격의 규정이 아닌 강행규정 내지 의무규정으로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하겠음.

8) 교육(안 제9조)

- 안 제9조는 청원경찰의 교육훈련은 인력개발과장이 총괄하며(안 제9조 제1항), 사용부서장은 직무교육 및 성희롱예방 등 법정필수 교육을 실시하고 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안 제9조 제2항~제5항), 「공무원 교육훈련」 사항 중 일부를 청원경찰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p>안 제9조(교육 등)</p> <p>① 청원경찰의 교육훈련은 인력개발과장이 총괄한다.</p> <p>②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원경찰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기술 및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나. 배치 시의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라.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3. 연 1회 이상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p>③ 청원경찰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p> <p>④ 교육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에 따른다.</p> <p>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p> <p>⑥ 그 외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아래 사항 중 청원경찰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청원경찰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

- 1. 제2인생 설계와 준비를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
- 2.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해외탐방, 해외견학 참여
- 3. 직무와 관련한 자격증 시험 및 교육 관련 여비와 관련된 사항
- 4. 서울시가 시행하는 「효행공무원」 선정과 관련된 사항

- 동 제정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에 규정된 교육관련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요청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안 제9조제6항에서는 청원경찰에게 「공무원 교육훈련」 사항 중 일부 교육훈련과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원경찰과 유사한 법적지위에 있는 공무직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은 직무관련성 유무가 중요한 요소인 바, 중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효과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9) 보수 및 수당(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 등 경비는 청원경찰법령과 매년 경찰청에서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0조(보수 및 수당 등)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 등 경비는 청원경찰 법령과 매년 경찰청에서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에 따른다.
- 동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과 「청원경찰 단체협약」에 의해 적용되는 것을 조례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명문화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조례 명문화에 따른 관련 규정(「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청원경찰 단체협약」) 정비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0) 휴가 및 복무상 의무(안 제11조 및 제12조)

- 안 제11조는 청원경찰의 휴가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르며,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1개월 범위내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하고, 안 제12조는 복무상 의무를 「청원경찰법」에 규정된 것을 적용하려는 것임.

안 제11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②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하기 직전 1개월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안 제12조(복무상 의무) 청원경찰의 복무상 의무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과 동법 제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것에 한한다.

- 동 제정안은 규칙(「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제정안 제12조 복무상 의무 규정 중 ‘동법 제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것에 한한다’는 규정은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인 바, 조례 적용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보다 명확한 표현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6조에서는 “청원경찰의 의무 등에 관해서는 「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 입법의견에 대한 검토

- 본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에 따라 서울시청원경찰(공공안전관) 노동 조합에서는 교육훈련과 처우에 관한 추가 조문의 신설을 요청하고 있음.

입법예고결과 요약	
의견제출자	제출 의견
서울시청원경찰 (공공안전관)노동조합	<p>○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p> <p>① 청원경찰법 시행령 18조 (신분)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하나, 청원경찰법 제1조 ~ 제12조에서 보면 청원경찰 신분의 이중적인 면을 볼 수 있음.</p> <p>②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조문 추가 요청이 있었음.</p> <p>(교육훈련) 서울특별시 인력개발과는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청원경찰에게도 적용하여야 한다.</p> <p>1. 청원경찰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 · 기술 및 능력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대학교, 대학원 진학에 대한 등록금 일체를 공무원에 준한 대우로 지원 할 경우, 필요한 예산과 범위 · 계획 등을 수립하여 고려할 사항</p> <p>(처우) 서울시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1. 임용 및 인사 2. 복무 3. 징계 4. 보수 5. 재해보상금 및 퇴직금(공무원연금) 6. 휴직 및 명예퇴직 7. 직권남용 8.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9. 공무원후생복지 10. 복종 및 비밀엄수 11. 신분보장(면직) 12. 쟁의행위금지</p>

- 서울시 청원경찰(공공안전관) 노동조합의 제출의견은 교육훈련과 처우에 있어서 공무원에 준하게 적용을 요청하고 있으나, 청원경찰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 교육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하고, 처우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행정국은 대학교, 대학원 학자금 일체 지원은 직무관련성을 규정하기는 했으나, 청원경찰 직무와 관련된 경찰행정학과 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함.
- ※ 또한, 처우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사례를 열거한다고 하여 청원경찰 신분이 공무원으로 될 수 없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과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라.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증진 등 처우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며, 격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이면서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 등을 적용받는 복합적이고 이중적 신분지위에 있다는 점, 시장의 고유권한 사항인 인사권 등의 개입정도와 적정성 여부, 공무원과 청원경찰의 업무 성격이 유사하다고 하여 청원경찰의 처우를 공무원과 유사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다른 공무직 처우와의 형평성 등에 주의가 요구되는 바,
 - 상위법령에 위배하지 않고,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원경찰의 노동조건 개선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한 대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	-----	-------	-----